

지회설치 및 운영규정

- 제 1 조 (지회설치 및 운영) 한국수자원학회 지회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제 2 조 (지회구성) 지회구성은 대권역 단위 이상으로 하되,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하고, 당해 지회구역 내에 재주하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잔여회원은 자동적으로 지회회원이 된다.
- 제 3 조 (지회회원) 지회회원은 당해 지회구역 내에 재주하는 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제 4 조 (임원 및 임기) ① 지회에는 회장 1인과 부회장, 위원장 및 지회평의원 약간명, 2인 이내의 지회감사를 둔다.
- ② 지회장, 부지회장, 위원장을 포함한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지회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지회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- 제 5 조 (수지) 지회의 경비는 입회비, 연회비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 6 조 (회비환부) 징수회비는 본회에 납부하여야 하고, 50%를 지회경비로 본회에서 환부한다. 다만, 기타 수입은 전액을 당해 지회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.
- 제 7 조 (회계연도)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 8 조 (대외적 활동) 지회의 대외적 활동사항은 본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 9 조 (지회감사) 본회는 지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.
- 제 10 조 (감사반의 구성) 지회업무에 대한 감사반은 본회 이사, 감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인사로 구성한다.
- 제 11 조 (의사록) 지회는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임원이 서명날인한 다음 지회사무국이 보관한다.
- 제 12 조 (보고의무) 지회는 매년 사업계획, 예산, 결산, 재산목록 및 임원개선에 대한 결과를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1. 회의록
 2. 지회회원의 이동 및 변경사항
 3.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 13 조 (지회규약) 지회규약은 당해 지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 14 조 (본회 임원의 지회총회 참석) 지회총회에는 본회 임원이 참석할 수 있다.
- 제 15 조 (지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) 지회의 해산은 지회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본회 평의원회의 의결로써 지회를 해산할 수 있다. 해산에 따른 지회 잔여재산은 자동적으로 본회에 귀속된다.
- 제 16 조 (규정시행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